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0일,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등에관한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도 법률에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u>인구감소지역에</u>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 ----- <u>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u> ----- ----- -----.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u>

<신 설>

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
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
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
· 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
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
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으로,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
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
기본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
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

<신 설>	· 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생활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¹⁾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1월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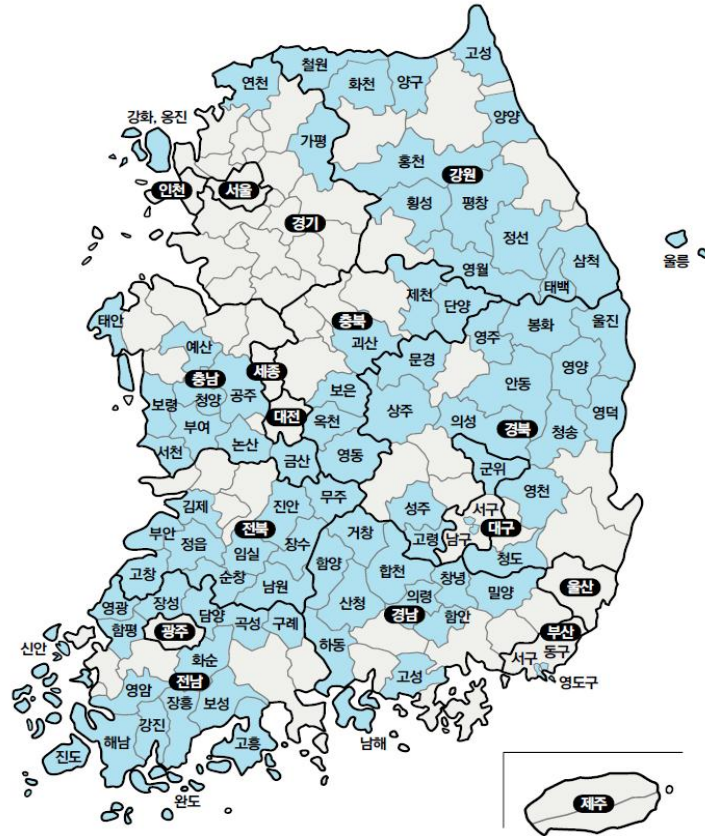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21.10.19.)에는 경상북도에 속했으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3.7.1)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²⁾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부산(2)	금정구 중구
인천(1)	동구
광주(1)	동구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1)	익산시
경북(2)	경주시 김천시
경남(2)	사천시 통영시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위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계획이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생활권 설정 등을 규정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비교]

인구감소지역(현행법)	인구감소관심지역(개정안 ³⁾)
<u>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u>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⁴⁾ 기초지원계정의 95%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분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적용되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1.12.7.)을 통해 도입되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7,500억 규모로 지원
- (배분방식)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1,50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1,000억, '24.~)	▶ 광역별 배분금액의 40% 출자 ※ 배분기준 개정('24.1.16.)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관심 단계부터 대응하도록 정의 규정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지방교부세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예방 관리를 위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 등을 규정하고 지방교부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구를 정비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군·구는”으로, “계획”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군·구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협약체결”을 “협약 체결”로, “생활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을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4조(인구감소 예방 관리 지원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4조(인구감소 예방 관리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구감소관심지 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인 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 여 인구감소관심지 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④ <u>인구감소관심지 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인</u>	제34조(인구감소 예방 관리 지원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시</u> <u>·도</u> ----- ----- ----- <u>시·군</u> <u>·구</u> 는----- ----- ----- ----- <u>인구감소관심 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 ----- ----- ----- ----- ----- ④ ----- ----- <u>시</u> <u>·도</u> -----
<u><신설></u>		

<신 설>

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하
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
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
다)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를 거쳐 생활권
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
감소관심지역대응
위원회를 두는 경
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시·군·
구는-----

-----이 항에서-----

⑤ -----
-----인구
감소관심지역대응
위원회 설치에 관
하여는-----

-----.

	계획”은 “시·군·	-----
	구 인구감소관심지	-----
	역대응기본계획 및	-----
	시행계획”으로, “시	-----
	·도 인구감소지역	-----
	대응기본계획 및	-----
	시행계획”은 “시·	-----
	도 인구감소관심지	-----
	역대응기본계획 및	-----
	시행계획”으로, “시·	-----
	도기본계획”은 “시	-----“시·
	·도 인구감소관심	군·구 및 시·도
	지역대응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
	으로, “시·군·구기	위원회”-----
	본계획”은 “시·군·	-----
	구 인구감소관심지	-----
	역대응기본계획”으	-----
	로 “시·군·구 및	-----
	시·도 인구감소지	-----
	역대응위원회”는	-----
	“시·군·구 및 시	-----
	·도 인구감소관심	-----
	지역대응위원회”로	-----
	보며, “인구감소지	-----
	역”을 “인구감소관	-----
	심지역”으로, “지방	-----.

	<u>을 “인구감소관심</u> <u>지역”으로 본다.</u>	----- -----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 <u>인구감소관심지역</u> ”이란 「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략)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u>인구감소지역</u>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 ----- <u>인구감소지역</u> 및 <u>인구감소관심지역</u> 에----- ----- ----- -----.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u>

<신 설>

<신 설>

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
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
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
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
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

<신 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